2021년도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
고숙련 · 신기술 (자체)훈련과정 모집 공고

2021년도 고숙련·신기술 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역량 있는 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.

2021년 3월 5일

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

1 사업 개요

□ 사업목적

○ 산업구조 고도화에 맞춰 일정한 숙련을 지닌 재직자들을 대상으로 숙련도 향상을 통한 기업의 핵심인재로 육성

○ 신기술 습득을 통하여 국민 개개인의 고용가능성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 확보에 이바지

□ (지원과정)

○ **(고숙련과정)** 일정 수준의 숙련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숙련도 향상을 위해 국가직무능력표준(NCS) 5수준 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으로 심사위원회에서 판단한 훈련

○ **(신기술과정)**

- 법령 등에 의하여 신기술인증이나 신제품 인증을 받은 기술의 습득, 활용, 제품의 생산, 원자재 생산에 필요한 역량 개발 훈련
- 4차 산업혁명 관련 20개 분야 기술의 습득, 활용, 관련 제품의 생산, 원자재 생산에 필요한 역량 개발 훈련

2 참여 가능 기관 및 과정 인정요건

< 참여 가능 기관 >

□ 자체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기업

○ 소속 근로자 및 협력관계(계열사 포함)에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자체로 고숙련 또는 신기술훈련과정을 실시하고자 하는 기업

* 타사근로자훈련과 자체+위탁 훈련 가능

* 대규모 기업이 실시하는 경우에는 우선지원대상기업(협력업체) 근로자를 전체 훈련 인원의 20% 이상 참여 또는 신기술분야 훈련참여 인원이 고숙련분야 훈련참여 인원보다 많아야 함

↳ ① 전체 훈련인원 200명인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가 40명이상 참여

② 대규모기업 근로자 20명이 고숙련훈련에 참여(실시)할 경우, 연도 내 신기술훈련 과정도 개설하여 20명 이상의 근로자 참여

< 과정 인정요건>

□ 고숙련과정

○ **(정의)** 근로자를 대상으로 숙련도 향상을 위해 국가직무능력표준(NCS) 5수준 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으로 심사위원회에서 판단한 훈련

○ **(인정기준)**

◆ **(NCS 편성과정)** NCS 5수준 이상의 능력단위(요소)로 구성하여야 하나 해당 NCS 소분류가 5수준까지 개발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상의 수준의 능력단위(요소)로 구성한 과정

◆ **(비NCS 편성과정)** 해당 분야의 이론 및 지식을 토대로 매우 복잡하거나 비일상적인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향상 또는 그 이상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과정. 단, 비NCS로 편성한 경우에는 기업의 전체 훈련 체계도 내에서 해당 과정의 수준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

□ 신기술과정

○ 산업기술촉진법에 의하여 신기술인증이나 신제품 인증을 받은 기술의 습득, 활용, 제품의 생산, 원자재 생산에 필요한 역량 개발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과정

◆ 신기술인증(NET), 신제품인증(NEP)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제18조의2, 제18조의5에 의해 인증 받은 기술 또는 제품으로서 과정 신청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을 것

❍ 4차 산업혁명 관련 20개 분야 기술의 습득, 활용, 관련 제품의 생산, 원자재 생산에 필요한 역량 개발 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과정 및 직무관련 융합 훈련과정(20개 분야+일반직무(30%이내)) 포함

◈ 4차 산업혁명 관련 20개 분야

- 인공지능, 빅데이터, 클라우드, 사물인터넷, 5G, 3D프린팅, 블록체인, 지능형 반도체, 첨단소재, 스마트헬스케어, AR/VR, 드론, 스마트공장, 스마트팜, 지능형로봇, 자율주행차, O2O, 신재생에너지, 스마트시티, 핀테크 등

< 공통사항 >

◆ 훈련대상은 고용보험을 취득 중인 재직자만 참여할 수 있으며, 채용예정자, 구직자, 실업자는 지원 제외

◆ 훈련방법은 집체훈련만 가능(원격훈련, 스마트훈련, 현장훈련 제외)

◆ 훈련내용은 NCS로 편성하는 것을 권장(고숙련은 NCS 5수준이상)하되,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비NCS로 설계하는 것도 가능

- 단, 고숙련과정을 비NCS로 설계한 경우에는 기업의 전체 훈련체계도 내에서 해당 과정의 수준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

◆ 훈련시간은 16시간 이상(우선지원기업 근로자는 8시간 이상)으로 하되, 고숙련 또는 신기술과 관련된 실험, 실습 시간을 전체 훈련 시간 중 30%이상 편성하여야 함

- 과정인정 신청서에 실험(실습) 내용을 상세히 기재하여야 하며, 실험(실습) 후 증빙자료를 자체적으로 보관하고 필요시 제출

◆ 우대사항 : 우선지원기업, 장시간 훈련, NCS 또는 실습 비중이 높은 과정, 신청과정과 신청인원이 많은 과정 등

◆ 지원제외

- 일반사무행정(컴퓨터활용, 리더십, 고객만족, 영업 등)
- 제품의 단순한 생산 또는 장비 운영에 대한 훈련
- 법령에서 사업주나 근로자에게 의무로 부과된 훈련
- 자격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훈련
-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5조에 따라 인정 제외 대상

3 지원내역 및 한도

□ 훈련비

< 실비지원 방식 >

○ 훈련비는 일반 직무훈련과의 차별성을 감안하여 기업 규모와 무관하게 NCS직종별 단가(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별표2)의 300% 이내에서 지원

- NCS직종별 단가의 300%는 최대 지원한도이므로 신청기관은 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출한 내역서와 증빙자료를 제출
- 공단은 훈련비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과다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과정자체를 부적합 처리 또는 일부 조정할 수 있음

◆ 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
- 단순 계산 착오로 신청한 경우
- 강사 등급이 낮아져서 등급에 맞는 강사료로 조정하는 경우
- 정해진 단가가 있음에도 착오로 높게 책정한 경우(교재인쇄비, 강사료 등)
- 지원이 불가능한 항목을 신청한 경우
- 기타 필요성이 낮거나 증빙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등

○ 심사를 통해 확정된 단가를 지원하는 방식이므로 정산절차는 없음

* 단, 회계관련 서류는 3년간 보관하여야 함

< NCS직종별 기준단가 지원방식 >

○ 훈련비를 NCS직종별 기준단가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비용 산출 내역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, 공단에서도 훈련비 적정성 심사를 진행하지 않음

○ **신기술훈련은 훈련비 최소보장(NCS단가 150%)*도 선택 가능**

* 제출서류 간소화(훈련비 신청내역서 미제출)

4 신청 및 인정(심사) 절차

□ 과정인정 신청

○ 신청기간 : ‘21년 3월 5일 ~ 12.3일까지 HRD-Net으로 신청

* **고숙련**: ▲(상반기) ‘21.3.5.(금)~3.31.(수) ▲(하반기) ‘21.7.1(목)~7.16.(금)

* **신기술**: ’21.3.5.(금)~12.3.(금)

- 하반기 고숙련 과정은 별도 공고하지 않으며, 예산을 초과할 경우 접수가 조기 마감될 수 있음

○ 신청방법 : 사업주 직무훈련과 동일하게 On-Line 신청

○ 제출서류 : 과정인정신청서, 실시계획서, 기타 증빙서류(별첨 참조)

□ 인정(심사)절차별 심사항목(항목별 심사지표는 별첨 참조)

○ **현장심사**

- **(심사위원회)** 신청과정의 직종과 과정 수 등을 감안하여 구성

※ `19년도 선정·실시한 과정으로 요건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 가능

- **(인프라 적정성)** 훈련장소를 방문하여 신청서에 기술한 훈련 인프라(인력, 조직, 시설, 장비 등) 구축 여부 확인

* 서류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으며, 공단 담당자가 현장 실사를 요청하였음에도 거절한 경우에는 신청이 반려될 수 있음

- **(훈련 적정성)** 기본요건, 훈련대상, 훈련내용이 고숙련·신기술에 해당하는지와 목표했던 훈련이 가능한지 등을 검토

* 심사지표에서 모든 적부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하며, 60점 이상 득점한 과정에 대해서만 적합 과정으로 인정. 심사지표는 [별첨] 참조

- **(훈련비 적정성)** NCS 직종별 단가의 300% 이내에서 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이 적정성 여부 등을 판단

* 과다한 경우에는 비용 조정 없이 과정을 부적격 처리하거나 일부 조정

○ **(선정위원회)** 심사위원회의 심사에서 60점 이상 적합판단을 받은 훈련과정 중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아래의 순서에 따라 최종 선정

- ① 우선지원기업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신청한 과정

- ② 우선지원기업 근로자의 참여비율이 높게 신청한 과정

5 훈련실시 및 비용신청

□ 과정 인정효력

○ 과정 인정의 유효기간은 과정인정일로부터 '21년 12월 17일까지이며, 유효기간을 도과한 경우에는 훈련실시 불가

○ 신청서에 기재된 과정 실시횟수만큼만 실시 가능하므로 추가로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승인 절차를 받아야 함

* 예산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만 승인이 가능하며, 별도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유효기간은 `21.12.17.까지이며, 기간 내 훈련을 실시하여야 함

□ 과정 변경인정

○ 변경인정 신청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불가항력의 사유*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

* 강사의 개인사정으로 훈련을 실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대체한 경우

* 화재, 침수, 강풍 등의 재해로 승인 받은 시설장비 활용이 불가하여 동일한 시설장비로 대체한 경우 등

□ 훈련실시 및 수료보고

○ 훈련실시, 수료보고는 일반 직무훈련과 동일하게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8조, 제10조, 제18조에 따라 진행하여야 함

□ 비용신청

○ 비용신청은 일반 직무훈련과 동일하게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18조에 따라 신청하여야 함

< 절차 안내도 >

사업공고 / 설명회	▶	과정신청	▶	현장심사/심사위원회	▶	과정인정~비용지급
본부, 소속기관		기업		소속기관		소속기관, 기업
홈페이지 공고/설명회		HRD-Net에 등록		인프라, 과정내용 등		훈련실시 및 운영지원
공고일 ~ 3.31.		공고일 ~ 3.31.		공고일 ~ 12.10.		공고일 ~`21.12.31.

* **고숙련 접수**: ▲(상반기) '21.3.5.(금)~3.31.(수) ▲(하반기) '21.7.1(목)~7.16.(금)

* **신기술 접수**: '21.3.5.(금)~12.3.(금)

6 기타 유의사항

□ 선정배제

○ 신청자격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신청자격과 관련하여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

○ 그 밖에 훈련을 실시할 조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심사위원회에서 판정한 경우

□ 선정취소

○ 선정 통지 후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통지 없이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

- 선정 이후 신청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이 확인되거나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
- 선정 이후 무단으로 전부 또는 일부의 훈련을 이관 또는 재위탁한 것이 발견된 경우
- 법령 위반으로 위탁 또는 인정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훈련기관 또는 훈련과정이 선정된 경우
- 기타 관련 법령상에 훈련과정 인정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

□ 승인과정 부적합 시행에 대해 조치

- 과정별로 최초 승인인원의 50% 미만으로 수료하거나 승인 받은 과정을 미개설(폐강)한 경우에는 차기 과정 신청이 제한(불이익)받을 수 있음
- 대규모 기업의 경우 전체 훈련인원의 20% 이상 우선지원기업 근로자를 참여시키지 못한 경우 또는 신기술분야 참여인원이 고숙련 분야 참여인원 이상 참여시키지 못한 경우에는 차기 과정 신청이 제한(불이익) 받을 수 있음

* 과정별 20%가 아닌 모든 과정을 합한 전체 인원의 20% 이상이면 가능

□ (문의처) 관할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 사업주훈련 담당자